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2명(8급 2명)을 감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직군 정원 1명(연구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의3제3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영

제11조의3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제6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업의 지방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의3.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기타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개선

제19조의3제2항 중 “재난보험과장 및 수습지원과장”을 “재난보험과장·수습지원과장 및 수습관리과장”으로, “보하되,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을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를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로,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을 “3명(행정주사 3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5명”을 “6명”으로, “5급 2명”을 “5급 2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54조제6호 중 “재난보험과 및 수습지원과”를 “재난보험과,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기획인프라과·재정정보화사업과·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및 지방세정보화사업과를 두되, 기획인프라과장”을 “기획협력과·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으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을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을 “재해복구시스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4.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6.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시행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협의·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
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7.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5.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운영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8.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을 “4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0”을 “21”로, 행정서기보 “13”을 “14”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52”를 “1,6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10”을 “1,6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을 “4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0”을 “21”로, 행정서기 “14”를 “13”으로, 전산서기 “5”를 “4”로, 행정서기보 “13”을 “14”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7”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8”로, 통신운영서기 “4”를 “3”으로, 전기운영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를 “7”로, 통신운영서기 “4”를 “3”으로, 전기운영서기 “2”를 “1”로 한다.

별표 9 중 3급 또는 4급 이하 “408”을 “409”로 하고, “전문경력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13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33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존속하며,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존속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직국) ① ~ ③ (생략)	제10조(조직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u>
18. ~ 20. (생략)	18. ~ 20.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② (생략)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영</u>
14. (생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u><삭 제></u>

<u>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영</u> 6. ~ 8. (생략) <신설> 9. ~ 18. (생략)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5. (생략) 6. <u>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신설> <신설> ⑦ (생략)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8의2. <u>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9. ~ 18.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1의2. <u>기업의 지방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u> 1의3. <u>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u> 2. ~ 5. (현행과 같음) 6. 「<u>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u>」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u>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u> 8. <u>기타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개선</u>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현행과 같음)
---	---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며,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u>재난보험과장 및 수습지원과장은</u>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u>보하되</u>,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u>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u> ③ ~ ⑦ (생략)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생략)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u>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u>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u>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u>,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② ----- ----- ----- ---<u>재난보험과장·수습지원과장 및 수습관리과장</u>----- ----- ----- ----- <u>보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u>----- ----- ----- -----
---	--

장은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제주출장소장은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3명(행정주사 3명)-----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5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 ----- ----- ----- ----- 6명----- ----- 5급 2명, 6급 1명----- -----.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조과, 재난보험과 및 수습지원과	6. ----- 재난보험과,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생략)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	② -----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인프라과·재정정보화사업과·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및 지방세정보화사업과를 두되, 기획인프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4. 삭제

--- 기획협력과·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

-----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

----- 재해복구시스템과장-----

--.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4.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관련 빅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6.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시행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5의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5의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5의4.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의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u>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u> <u>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④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u> <u>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협의를·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u> <u>5.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6. 지방재정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u>	<u>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협의를·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u> <u>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6.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u>	<u>· 시행</u> <u>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2의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3.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4.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u> <u>5. 지방보조금포털 구축에 관한 사항</u>	<u>영</u> <u>7.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u> <u>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3.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u> <u>5.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u> <u>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운영</u>
---	---	---	---

6. 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4의2.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6.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시행 8.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8. 차세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0</u>	<u>49</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20</u>	<u>21</u>	+1
·	·	·	
·	·	·	
행정서기보	<u>13</u>	<u>14</u>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7</u>	-2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652</u>	<u>1,650</u>	-2
·	·	·	
·	·	·	
일반직 계	<u>1,610</u>	<u>1,608</u>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0</u>	<u>49</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20</u>	<u>21</u>	+1
·	·	·	
·	·	·	
행정서기	<u>14</u>	<u>13</u>	-1
전산서기	<u>5</u>	<u>4</u>	-1
·	·	·	
·	·	·	
행정서기보	<u>13</u>	<u>14</u>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7</u>	-2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6</u>	<u>8</u>	+2
·	·	·	
·	·	·	
통신운영서기	<u>4</u>	<u>3</u>	-1
전기운영서기	<u>2</u>	<u>1</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5</u>	<u>7</u>	+2
·	·	·	
·	·	·	
통신운영서기	<u>4</u>	<u>3</u>	-1
전기운영서기	<u>2</u>	<u>1</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8</u>	<u>409</u>	+1
·	·	·	
<u>전문경력관</u>	<u>1</u>	<u><삭 제></u>	-1
·	·	·	